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임면규정**

#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임면 규정

제정 2014. 01. 16.

개정 2014. 05. 08.

개정 2017. 01. 10.

개정 2018. 02. 12.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10. 개정)

**제2조(정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제2조 제6호에 명시한 지도자를 말한다.(2017.01.10. 개정)

**제3조(구분)**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임면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 장애인체육회에서 임면 상근하는 지도자
2. 삭제 (2017.01.10. 개정)
3. 전임 지도자 : 장애인체육 경기종목 전문 지도자.(2017.01.10. 개정)

## 제2장 채용

### 제4조(채용)

- 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채용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실시하며,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017.01.10. 개정)
- ② 채용인원은 회장이 정하며, 장애인체육회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 공개채용의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 ④ 1차 서류전형의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로 선정한다.

**제5조(자격기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로서 인격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017.01.10. 개정)

1.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2. 특수체육전공자(석·박사 및 졸업예정자 포함)
3. 국가공인 자격보유자(생활체육지도자 1급~3급, 경기지도자 1급 ~ 2급, 체육과학연구원).
4.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양성 교육 수료자(2008년 ~ 2011년 / 대한장애인체육회)
5. 경기단체(가맹, 인정, 유형별)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1급 ~ 3급)

**제6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중인 자
6. 체육지도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타 시·도 및 시·군·구 협회에서 징계처분 등으로 사직한 자
7. 기타 채용권자가 체육지도자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채용구비서류)** 지도자 채용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3. 주민등록등본
4. 관련자격증 사본
5. 경력증명서(해당자만 해당)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7.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행)
8. 장애인복지카드 나 장애인선수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운전명허증 (2017.01.10. 개정)

**제8조(채용계약)**

-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② 회장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이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③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결근 기간 동안 대체할 지도자를 선임하여 회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체육위원회)** 지도자의 배치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제10조(준수의무)** 지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복종 의무
2. 친절·공정·청렴 의무
3. 비밀엄수 의무
4.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제11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 ① 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 ② 삭제 (2017.01.10. 개정)

## 제3장 근무

**제12조(근무시간)**

- ①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중식시간 제외), 주 40시간으로 한다. (2017.01.10. 개정)
- ②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추가 근무시간을 주 4시간을 명할 수 있으며, 주 4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사무처장은 근태관리 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지도자의 근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지도자는 근무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매일 작성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처에 월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지도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월의 1개월 전까지 근무성적 평정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제13조(결근)**

-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일 퇴근 시각 전까지 담당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전일에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업무시간 전까지 연락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와 담당책임자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4조(휴일)**

- ① 지도자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휴일(일요일 또는 일요일 대신 회장이 정하는 날)
  2. 국경일
  3. 기타 정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근무를 명 할 수 있다.

#### 제15조(유급휴가)

-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2018.02.12. 개정)
- ②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계속근무 년 수가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④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의 기간은 유급휴가로 한다. 이 경우 휴가 중의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한다.
  1. 결혼 : 본인결혼 5일, 자녀결혼 1일
  2.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사망, 배우자사망, 자녀사망 5일

#### 제16조(교육)

- ①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지도자의 프로그램 및 지도 능력개발과 봉사자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도모하고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고양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운영실태 점검 및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지도자는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장 급여 및 수당

제17조(급여) 지도자의 임금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한다.

제18조(수당)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시간 외 근무수당.
2. 휴일수당.
3. 출장비

제19조(급여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도자의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0조(지급방법)** 지도자의 급여는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급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2. 무단결근자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대체 지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 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장 징 계

**제21조(징계의 종류)**

- ①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 직 : 지도자로서의 신분의 해직
  2. 정 직 : 일정 기간 동안 정직(무보수)
  3. 감 봉 : 일정 기간 동안 감봉(월 지급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
  4. 견 책 : 전과의 반성 및 근신
- ②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22조(징계사유)**

- ①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즉시 처리할 문서를 보류, 방치 또는 폐기하거나 근무 일지의 허위작성, 지도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 ② 제1항의 징계사유에 의하여 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회원단체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책임에 따라 변상토록 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절차)**

- ① 회장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규직원과 일괄하여 징계 의결할 경우에는 정규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른다.

**제24조(해직)**

-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직된다.

1. 의원해직 : 본인의 원에 의한 해직
  2. 당연해직 : 본인의 사망
  3. 직권해직 : 회장은 지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가. 구속,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30일전 예고)
    - 나. 계약 1년 이내에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또는 평소 출근성적불량을 이유로 4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 다.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라. 제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 마. 준수하여야 할 복무사항 및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바. 사업의 중단 또는 예산의 미확보 등 기타 장애인체육회 형편상 지도자의 고용이 필요하지 아니할 때
- ② 회장은 지도자를 직권 해직 할 경우 해고의 예고 또는 해직의 사실을 해당 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장 보 칙

**제25조(건강진단)** 지도자는 매 2년 마다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 시 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을 생략한다.

### 제26조(재해보상)

- ① 지도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보상금 지급에 갈음한다.
- ② 회장은 재해보상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7조(준용준칙)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제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이 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01. 16.)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05. 08.)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01. 10.)



[별지 제1호]

# 지 원 서

접 수  
번호

사  
진

인 적 사 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 (만 세)
	자 격 증	주 종 목 부 종 목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모집에 응시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 접 수 증

- 접 수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 수 험 표

사 진	접수번호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실기종목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별지 제2호]

## 채용계약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계약을 함에 따라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 1. 계약 체결자

사 용 자	사 업 체 명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 직 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 2. 계약조건

#### 가. 기본사항

계 약 기 간	년 1월 1일 ~ 년 12월 31일
보 수	급여 월 원
신 분	계약직 직원(전일제체육지도자, 시간제체육지도자)
담 당 업 무	장애인생활체육현장지도 및 장애인체육 선수인 육성
근 무 시 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 근무
급여지급시기	매월 20일
급여지급방법	개인통장으로 지급

#### 나. 기타사항

본 계약은 계약일 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체육지도자 임면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회 장 (인)	근로자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계약직원 (인)
-----	--------------------------	-----	---------------------------



[별지 제4호]

## 근 무 일 지

	결	담 당	사무처장
	재		
년 월 일 ( )요일	지도자 성명 :		
담당지역 :			
담당종목 :			
담당사업 :			
금일 실시사항			
내일 예정사항			
검 토 의 견			
건 의 사 항			

[별지 제5호]

## 근무성적 평정표

피 평 정 자	소 속		평 정 자	소 속	
	성 명			직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 평정기간 : . . . ~ . . . (평정기준일 : . . . )

평정요속	배점	착 안 점	기 준 점 수					평정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책 임 감	20	○맡은 담당업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노력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	20-17	16-14	13-8	7-5	4-1	
2. 인화단결 과 협조성	20	○지도자로서 동료, 상사에 협조하는 정도 ○지도자간 인화단결 및 화합분위기 조성	20-17	16-14	13-8	7-5	4-1	
3. 봉사자세	20	○장애인에 대한 봉사자세 ○친절, 성실한 지도자세	20-17	16-14	13-8	7-5	4-1	
4. 프로그램	20	○프로그램의 작성 능력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	20-17	16-14	13-8	7-5	4-1	
5. 근태관리	20	<b>근태관리 점수기준</b> ○결근 1회당 5점 감점 ○지각 1회당 3점 감점 ○조퇴 1회당 3점 감점	20-17	16-14	13-8	7-5	4-1	
합계 점수(총점 : 100점)								

- ※ 근무성적 평정은 제1, 2차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상급자(사무처장이 지명한 직원)로 하고, 제2차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차상급 책임자(사무처장)로 한다.
- ※ 제1차, 제2차 각각 독립하여 평정한 후 합계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정점수로 한다.
- ※ 평정자는 평정결과가 재계약 여부의 기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 ※ 평정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위하여 평소 근무성적평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